

# 古書目錄의 改善과 發展을 위하여

千 惠 鳳

## 序 言

古書目錄에 對한 記事를 發表해 달라는 請託을 받자 이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어 떻게 하면 古書目錄을 올바르게 認識하고 因襲的인 在來方法을 止揚토록 할것인가에 對한 問題였다.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에는 古書의 分類나 目錄은 高齡의 老人이 四部法을 適用시켜 書名基本記入으로 適當히 處理하면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甚至於是 別로 古書의 所藏이 없다는 理由로 無關心을 表明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큰 過誤라고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古書目錄은 東書目錄의一部分이므로 實務者나 教育者나 다같이 東書目錄을 擔當한 사람은 반드시 古書目錄에 對한 知識과 造詣가 있어야만 올바르게 맡은 바 任務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東書目錄規則의 構成內容을 보더라도 首肯 할 수 있거니와 또 古書에 對한 現代解釋書와 批評書라든가, 그에 關한 研究書等에 있어서도 原書의 標目을 알아야만 올바르게 副出記入도 할 수 있고 著者記號도 配當할 수 있는, 目錄의 實際의 인一面을 보더라도 證明될 수 있는 것이다. 西書의 古典作品에 對한 註釋書, 批評書와 그에 關한 研究書는 目錄規則에 따라 올바르게 處理되고 있으면서도 東洋의 古書에 對해서는 그릇되게 다루어지고 있는것을 往往 目覩하는 일이 있다. 또一方 現在 古書의 景印과 活印複製가

頻繁해지고 東洋學의 研究가 各種論文集 또는 單行本으로 繽綷히 刊行되고 있는것을 보더라도 이를 目錄하는 司書는 먼저 東洋의 古書目錄에 對한 知識이 있어야만圓滿히 處理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猥濫된 일인지는 모르나 筆者는 이러한 생각에서 捧著인 “古書目錄에 있어서의 當面한 諸問題”를 土臺로 古書目錄의 改善과 發展을 위한 몇 가지의 問題點을 提起하려 한다.

## 一. 古書目錄의 分割編成에 對한 檢討

우리나라 各圖書館의 在來 古書目錄을 綜覽하면 舉皆가 新書目錄과는 別途로 分割編成되어 있다. 古書만을 對象으로 한 分割目錄體制에도 각각 長短點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利用者の 便宜를 中心으로 볼때는 長點(註1)보다 短點이 많은 것은事實이다. 古書의 分割目錄에 對한 批判度는 最近 數個年에 걸친 세로운 圖書館學의 理論과 技術의 飛躍의in 發展으로 말미암아 더욱 高潮되었다. 이 態度는 言語와 文字에 拘碍がない 없이同一書 또는同一主題의 圖書를 單一體系의 目錄으로 編成하여 利用者が同一書의 多版과同一主題의 多圖書를 한곳에서 簡便迅速히 檢索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도 理由가 있지만, 또한 오늘날의 古書概說이 옛 날과 같이 單純치 않고 複雜多端한데도 큰 原因

이 있는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古書라면 大體로 大韓帝國末期以前의 著者의 著述을 楷紙 紙等 옛종이에 木版 木活字 옛金屬活字 陶活字 等으로 박아냈거나 毛筆로 手寫하여 黃紙紅絲로 裝潢한 漢文으로 된 東裝書(方冊 또는 線裝本)를 생각하는 것이 通例이다. 勿論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典型的이고 傳統的인 古書의 概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古書의 概念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고 말할수 있다. 그 理由는 옛 著者의 著述를 著述年代 또는 刊行年代로 따져보아도 그 基準劃定이 困難하고 또 반드시 外部의 形態가 東裝으로 裝潢되고 内容의 文字가 漢字라해서 古書라고 일컫는 것은 實質的乃至普遍的인 意味에 있어서 古書가 될수 없기때문이다. 좀더 具體的으로 言及하면

1) 著述年代를 基準삼아 大韓帝國末期以前에 著述行爲가 이루어진것만을 古書라고 일컫는다면 그以後에 著述된것中에도 内容이 漢文이고 裝釘도 東裝이어서 古書의 範疇에 屬할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를 不得已 新書로 看做하여야 할 矛盾성이 드러난다.

2) 刊行年代를 基準삼아 大韓帝國末期以前에 刊行된것만을 古書로 認定한다면 大韓帝國以前에 著述된것이라도 그 이후에 上梓되면 古書라 稱할수 없게 되는 셈이 된다. 또 위 1)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大韓帝國以後에 出版된것 中에도 内容으로나 裝釘으로나 古書로 認定할수 있는것이 있음에도 不得已 新書로 看做하여야 할 矛盾성이 있다. 특히 後者에 있어서 古書는 著述即時로 殞梓되는 것보다는 後世의 子孫들에 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一般的

인 傾向임을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3) 裝釘을 基準삼아 東裝書(漢裝書)를全部 古書로 認定한다면 現代인이 著述한 것中 著者의 趣味에 따라 東裝으로 裝釘한것도 古書로 看做하여야 한다 反面 原來 東裝으로 된 典型的인 古書를 現代에 와서 景印 또는 活印再刊하여 洋裝으로 刊行한것은 新書로 看做하여야 할 矛盾性을 內包하게 된다. 이것은 다만 書架上의 裝釘別排列이 容易하므로 管理上 便利한 利點이 있을 다름이다.

4) 内容文字를 基準삼아 漢文으로 된것을 古書로 夾운다면 한글과 日語로 된 古書도 適지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取扱할것인가? 또 現代인이 著述한 洋裝의 漢文書는 어떻게 取扱할것인가? 이것을 古書로 夾우면 現代人の 百話文圖書도 内容文字가 漢字인데 이것도 古書로 取扱할 것인가? 等等의 問題가 提起되므로 古書의 限界를 划定하기가 困難하다.(註2)

이와같이 古書가 內包하는 概念이 暖昧하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위의 諸基準을 折衷한 立場에서 廣義로 解釋하여 大韓帝國末期以前의 著述은 言語外 文字에 拘碍됨이 없이 古書로 夾우고, 그 이후의 것中에서도 古典을 再刊하고 景印複製한 것과 漢書等을 비롯하여 内容이 古典의 範疇에 屬할 수 있는것은 裝釘에 拘碍됨이 없이 古書目錄의 對象으로 삼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말하자면 實質的인 意味에서 古書를 代表하는 目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性質의 古書目錄은 分割目錄으로서 獨立하기가 어렵다. 첫째로는 東裝書이든 洋裝書이든 그 裝釘에 相關없이 實質的인 古書로 認定되는 것은

다같이 目錄의 對象으로 삼았기때문에 目錄을 따로 編成하고 藏書를 別架한다면 그 利用과 管理가 困難하다. 둘째로는 古典의 碩譯書 現代解釋書 및 같은 主題에 關한 研究書等이 新書目錄으로 分離編成되며 기때문에同一主題의 것을 單一目錄으로 集中排列하지 못하고 新古書目錄으로 分散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問題를 解決하려면 古書와 新書를 나누어 二元的인 目錄體系로 編成할 것이 아니라 筆者が “古書의 分類問題”(註3)에서도 言及한바와 같이 單一目錄法과 分類法으로 다같이 整理하고 다만 藏書排列時에 東裝書만을 特殊裝釘으로 取扱하여 一般圖書에서 分離排列하되, 目錄은 어디까지나 單一體系로 編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약만 利用者가同一한 主題의 資料를 索出하여 利用하는데도 新古書의 二元的인 目錄體系보다 훨씬 能率의이며 또한 書架上의 圖書管理도 便利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古書目錄은 研究의 便宜上 東書目錄에서 떠어낸대 不過하며, 本論題가 目的하는바는 單一東書目錄의 原理下에서 新書와 古書를 함께 編成하려는데 있는것이다.

## 二. 目錄記入의 合理化

學術은 나날이 發展하여 國境敘이 傳播되며 交流되고 있다. 이러한 文化를 받아드리는 곳이 圖書館이므로 近代의 圖書館은 國際性을 具する 文化的 셈터인 것이다. 이런 點으로 볼때 東洋의 典型的인 古典文化도 東洋人만이 研究하는 專賣特許가 아니고 世界的으로 研究의 對象이 되는 文獻이며 資料인 것이다.例컨대 東洋의 古典

인 四書五經을 비롯한 諸家の 撰述書, 龙大한 佛典, 卷帙이 浩瀚한 各種史書類 等이 原典以外에 한글 日語는勿論 世界主要國語로 碩譯과 解釋되고 研究되어 널리普及되고 있으니 어찌 東洋의 固有한 在來文化라해서 東洋人만이 研究하는 學問이라 하겠는가? 國際的으로 文化交流가 活潑하면 活潑할수록 圖書館은 龙大한 資料와 利用者間의 媒介役割을 해주는 目錄의 組織에 있어서 國際的인 統一性을 圖謀하고 또한 過去와 現在는勿論이요 未來에 對해서도 普遍妥當性과 發展性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의 一例로서 目錄原則에 對한 國際會議를 들수 있다. 國際圖書館協會聯合(IFLA)에 依해서 主催되고 있는 國際目錄會議는 漸次로 成果를 거두고 있으며,(註4) 1961年 10月 파리會合에서는 國際目錄原則에 對하여 共同으로 聲明하고 앞으로의 計劃을 決議하고 있는바 그 活動이 자못 期待된다.(註5)

그러므로 우리의 古書目錄도 一律의으로 書名基本記入을 擇한다든가(新書는 著者名基本記入을 하면서도) 目錄記入形式과 記述을 目錄者の 自由裁量(go-as-you-please cataloging)에 따라 區區하게 하고 略記해서는 안된다. 또 目錄編成에 있어서도 古書와 新書를 分割하여 同一書와 同一主題를 分散시켜 利用者에게 不便을 주는 따위의 從來의 傳統的乃至 排他的인 固執을 버려야 한다. 반드시 國際的인 目錄規則의 原理에 立脚하면서 不足한 것은 이를 補充하고 暫昧한 것은 이를 具體화시키고 不必要한 것은 이를 刪除하여 目錄記入의 合理化와 統一을 期하여야 한다.

위에서 言及한바에 따라 古書의 基本記

入의合理化를期하려면新書와마찬가지로다음의基本原則이適用되어야한다.

1) 著作內容에對하여責任을질수있는著者를무엇이알수있는것은어느것이나다같이著者名을基本記入의標目으로잡아준다.

2)著者가未詳인것,不確實하여著者決定이困難한것,4名以上의著作으로主著者가없는것,옛官撰書等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多數人的著作으로서어느特定人에게그著作의內容에對하여責任을지울수없는것,集書類(Collections)와같이여러著者の作品을모은것도어느한個人이그內容全體에對하여責任을질수없는것이기때문에編者또는編輯者가무엇이表示되어있거나특히著名한境遇를境外하고는다같이書名을基本記入의標目으로잡는다.(註6)

3)統一標目은著者が確實치않거나不明인初期의作品으로서原典名以外에翻譯版에따라여러形의書名이있어어떤것으로基本記入의標目을잡을는지分間할수없는것또適確한著者로서人格性을把握할수도없고그렇다고해서卷首題또는標題를basic記入의標目으로내세우는것도適合하지않은것에適用된다.(註7)例를들면前者는著者が曖昧하거나全然未詳인古代의詩說話戲曲年代記神話傳說等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原典名外여러나라의言語로各種多様하게書名이만드려지고있는境遇인데이때는原典名이아니면自國語形의慣用書名(Conventional title)을끌라서統一標目(Uniform heading)으로한다.後者에있어서는佛典및其他經典等을그例로들수있다.佛典및其他諸宗教의經典

類는大概宗祖가直接記述한것이아니라宗祖의言行과敎訓을그弟or或은後世의信者가結集하여만든것이므로무엇한著者도없고,卷首또는標題紙에있는經典名그自身를그대로標目으로하는것도不適當하다.그러므로이러한特殊한性質의作品은그圖書의書名또는內容을代用할수있는適當한記入語(entry word)를만들거나끌라서統一標目으로하는것이다.

4)形式標目은例컨대現代의法典法令과官廳의團體著者에있어서國名을basic記入의標目으로하고法典名官廳名을副標目으로하는境遇이다.그러나古書에있어서는別로該當事項이없으므로이程度로言及해둔다.

그리고basic記入에있어서個人著者の記入形式은著者の本名을姓부터記入하는것을原則으로삼는다.그러나著者에따라서本名以外의이름을慣用하고있어本名보다도더有名하게알려지고있거나帝王王族僧侶等과같이特殊形名을使用하고있는것은一般的으로慣用되고있는形名을basic記入의標目으로삼는다.또姓名의一部가不完全한著者로서姓만表示되었거나이름또는號만알고姓을알수없는것,父母配偶者子女其他主人의이름으로알려진것은完全한部分또는主人等의이름다음에關係를表示하여標目으로하는等의例外의in取扱을한다. 目錄作成에있어서記入形式을重要視하는것은標目的統一을期하려는데있으므로一旦標目으로採擇된形式은언제나그대로지켜져야하며,그외의이름으로부터는參照를해주어야한다.

basic記入의標目選定및記入形式(個人

著者)에對한記入例와說明은 “古書目錄에 있어서의當面한諸問題” 36~110面을参考해 주기 바란다.

### 三. 記述의 特有性

古書目錄의 記述은 一般圖書의 境遇와 같이 一定한 記述目錄規則에 따라 誠實히 成れ면서도 또한 그 特有性을 充分히 살려주어야 한다. 그것은 記述의 原來의 目的이 한 圖書를 他圖書와 識別하기 위하여 그 特徵을 記述하고, 또 圖書의 性格範圍書誌 및 他書와의 關聯性等을 올바르게 理解시켜 올바르게 資料를 選擇利用토록 하기위하여 說明하는것임을 생각하면 能히 首肯할수 있는 問題이다. 换言하면 古書는 新書와는 달리 大體로 刊年表示가 없는 異版本이 적지않고, 物理의 인 形態도 判異하다. 또 古書는 稀観資料의 性格을 띠것이 많으므로 이에 相應하는 記述을 하여 利用者の理解를 도와주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古書目錄의 記述에 있어서 新書와는 달리 特히 目錄者를 腹心케하며 技術을 必要로하는 것은 刊年과 版本을 올바르게 識別하는 일이다. 古書는 刊記마저 記載되어 있지 않은것이 많다. 또 刊記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重刊本 또는 覆刻本이면서도 初刊本 또는 原刻本의 刊記만을 그대로 表示하고 重刊 또는 覆刻한 年代를 表示하지 않은것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版式 字體紙質 等의 版本學의 研究로서 刊年을 推定하고 同一書의 他版本과 識別을 容易케 해주어야 한다.

對照事項에 있어서 東洋古書의 特有한 物理의 形態의 인 面의 黑口, 魚尾, 匡郭의 크기 및 種類, 行字數, 界(野)線 等을

追加記述하는것도 그 目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要은 古書目錄의 記述에 있어서는 그 圖書의 識別上 必要한 諸事項을 一般 目錄規則에 따라 具體적으로 記述할것은勿論이요 特히 版種과 版式에 對하여 書誌學의 史學의 方法을 適用시켜 利用者로 하여금 重刊本 覆刻本보다는 原刊本을 擇擇하고 또 惑書와 僞書를 避하고 原本과 善本을 耽讀研究할수 있도록 必要한 事項을 追加記述함이 必要하다. 그하기 위해서는 古書目錄을 다루는 司書는 一般 目錄規則을熟知하여야하는 同時에 어느 程度의 書誌學의 知識과 經驗을 얻도록 研究하고 努力하여야 한다.

### 結語

以上에서 古書目錄에 對한 새로운 認識과 그 改善 및 發展을 위한 몇 가지 基本問題를 言及하였다.

이로써 보면 古書目錄은 分割目錄으로 獨立編成하는것보다는 東書目錄으로서 單一體系의 編成을 하는것이 좋겠다. 基本記入의 標目은 過去와 같이 書名을一律的으로 擇할것이 아니라 著作의 內容에 對하여 責任을 지는 著者를 主로 基本記入의 對象으로 삼고 그렇지 못한것은 目錄規則에 定해진바에 따라 書名, 統一標目等을 記入語(entry word)로 選定한다. 그選定된 記入語가 個人著者의 境遇는 特히 一定한 形式을 奏아 記入함으로써 標目的統一를 維持함이 必要하다. 그리고 記述에 있어서는 一般 目錄規則에 따라 記載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면서도 古書의 特有性을 살려 讀者の 版本識別에 도움이 되도록 必要한 事項을 追加記述함이 必要하

다. 或 사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方法으로 古書目錄을 만드는 일이 基本記入의 標目을一律的으로 書名으로 擇하고 또 記述에 있어서도 適當하게 略記했던 從來의 方法에 比하면 甚거롭고 어렵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司書職을 技術職 또는 專門職이라 稱하고 또 圖書館業務의 理論 및 技術을 圖書館學으로 일컫는 오늘날에 있어서 目錄의 基本原則을 無視하고 雖獨 古書目錄만이 在來의 方法을 践襲할 수는 없는 일이다. 目錄者の 便利主義를 為主로 했던 從來의 觀念과 態度를 止揚하고 어디까지나 目錄의 原則에 따라 利用者의 資料調査 및 索出에 便利하도록 目錄을 만드는 것이 司書로서의 頭腦이요 技術인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하므로서 圖書館學도 다른 學問과並行하여 發展할 것이다.

註 1) 長點으로서 例를 들면 어느 個人이 寄贈한 古書를 永遠히 記念하기 위해서 特殊取扱한다든가, 現在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에 있는 垂章閣 藏書와 같이 研究의 便宜를 提供하기 위하여 附屬시키고 管理를 맡긴 것은 그 自體의 本來의 藏書性質로 보아 本圖書館 藏書와는 別途로 分離시켜 取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註 2) 蔣元卿, 中國圖書分類之沿革, 臺灣, 中華書局, 民國46(1957) P. 187—189 및 伊木武雄“和漢書目錄法の研究(2)” 圖書館雜誌, 96號(昭

和2年 11月號) P. 305—308.

註 3) 千惠鳳, “古書의 分類問題(下)” 도립원, 2—4(1961) P. 305—308

註 4) Susan M. Huskins, “Moving toward international cataloging agreement”, ALA Bulletin, 54—2(1960) P. 194—196에掲載된 1959年度(7月19日—25日)의 英國 런던의 國際目錄會議보다도 1961年度(10月9日—18日)의 佛蘭西 파리會議에 이르러 더 큰 成果를 얻고 있다.

註 5) I.F.L.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Preliminary official report. Paris, 9—10th Oct. 1961 및 국제도서관 협회연합(I.F.L.A.) 북록원칙, “에비공식보고”, 이재진 역, 도립원보, 3—3(1962) P. 11—19.

註 6) id., P. 9—10 11 works entered under title 및 標目 B·標目選定 12 集書類.

註 7) Ibid., P. 4—1의 5·2에 依하면 “著者名 또는 書名에 여러 形式이 있을 境遇의 個個圖書에 對하여 統一標目을 쓴다. 이에 統一標目은 하나의 特殊形의 著者名 또는 하나의 特定書名이 된다. 著者名 또는 書名으로서 그 圖書의 識別이 不適當할 境遇에는 適切히 書名에 代用될 만한 統一標目으로 記入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狹義로 解釋하여 著者名 또는 書名으로서 그 圖書의 識別이 不適當한 때 이에 代用되는 統一標目에 對해서만 研究의 對象으로 삼았다.